

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14.5.28>

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도
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
이의신청인	성명(법인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 등)
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(팩스번호)
		전자우편주소
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		
이의신청 사유 ※ []에는 해당되는 곳 에 √표를 합니다.	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(공개[] 부분 공개[] 비공개[])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.	
	※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	
	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[]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,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 를 받지 못했음.	
	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	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
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(접수기관) 귀하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각 접수기관 (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)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m² (재활용품)]